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80

발의연월일: 2020. 7. 15.

발 의 자:정일영·고용진·이형석

김교흥 · 허종식 · 조정식

이성만 · 송영길 · 윤후덕

양향자 • 박상혁 • 맹성규

임종성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 분업체제가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국 복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. 이에 대한민국도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한 상황임.

또한,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 시대의 투자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그 목적과 내용의 수 정이 불가피한 상황임.

이에,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를 촉진하고자 법 목적에 국내 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투자 활성화를 명시하고 기본계획에 기업 유 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경제자 유구역의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 또한, 국내복귀기업의 정의를 확대하고 국·공유재산의 사용·대부료 감면 종료 기한을 연장하며 산업 단지계획 변경을 간소화함으로써 효과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기 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1조, 제2조 제1호 및 제6호, 제3조3제3호, 제7조의6제1항제11호 신설, 제16조제4 항).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외국인투자기업의"를 "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" 로, "외국인투자를"을 "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"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투자기업의"를 "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"기업을"을 "기업 및 해당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한 기업을"로 한다.

제3조의3제3호 중 "투자유치에"를 "투자 및 국내복귀기업 유치에"로 한다.

제7조의6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(이 경우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 획의 변경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)

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2023년 12월 31일까지"를 "202 8년 12월 31일까지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경제자유구	제1조(목적)
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	<u>থ</u>
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	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
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	의
로써 <u>외국인투자를</u> 촉진하고	외국인투
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	<u>자와 기업 유치를</u>
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	
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경제자유구역"이란 외국인	1
<u>투자기업의</u> 경영환경과 외국	<u>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</u>
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	의
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	
제4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되는	
지역을 말한다.	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6. "국내복귀기업"이란 「해외	6
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	
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	
지원대상으로 선정된 <u>기업을</u>	<u>기업</u>

말한다.

제3조의3(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)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<u>투자</u> 유치에 관한 사항

4. ~ 6. (생략)

제7조의6(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의 변경) 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이 수립·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 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 이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·변경·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.

및 해당 기업이 공동으로 출
자한 기업을
제3조의3(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
의 내용)
<u>.</u>
· 1.•2. (현행과 같음)
3투자
<u></u>
<u>및 국내복귀기업 유치에</u>
4. ~ 6. (현행과 같음)
제7조의6(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
계획의 변경) ①
·

1. ~ 10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- ② (생략)
- 제16조(세제 및 자금지원) ① ~
 - ③ (생 략)
 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,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 3년 12월 31일까지는 입주국내 복귀기업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유·공유재산의사용료·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있다.이 경우 국유·공유재산의사용료·대부료는 해당 국유·공유재산의사용료·대부료는 해당 국유·공유재산의가액에 연 1천분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

- 1. ~ 10. (현행과 같음)
- 11.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8 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(이 경우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 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 경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)
- ② (현행과 같음)
- 제16조(세제 및 자금지원) ① ~

 - ---.
 - _____
 - _____
 - -----.
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